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1호 2015년 2월 pp.67~98
한국세무학회

소득세법상 추계신고제도의 개선방안*

박태승**

<요 약>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납세가 원칙이나, 추계에 의한 신고도 허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계신고제도의 법률적 성격을 고찰한 후,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추계경비 인정여부와 추계신고자의 세무조사포함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기장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추계신고의 개념정의를 확정신고 조문에 명문화하고, 추계신고제도의 적용을 축소하여 기장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계신고제도를 법령에서 삭제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계 과세방법의 하나로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법령 체계 하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후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근거의 중요부분을 실지조사로 입증 가능하거나 추계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경정시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의 추계경비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무조사후 소득탈루율이 일정비율(2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실액과세를 하도록 하고, 대응비용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추계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한 신고시 납세협력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추계신고시 기장신고자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 간편장부 등 장부기장에 대한 지침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유인제도로써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수준인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14년도 인덕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 조용희 회계사님, 한재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덕대학교 세무회계과 부교수, tspark@induk.ac.kr, 02-950-7891

본 연구의 결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확대하고, 업종평균율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제도를 축소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한 후 폐지하여 사업자의 개별실적을 반영한 신고과세를 통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세정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추계신고, 추계과세, 기준(단순)경비율법, 기장세액공제

I. 서 론

소득세 부과방식은 1996년부터 정부부과제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납세자는 가급적 과세당국의 간섭 없이 정확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이를 토대로 스스로 신고납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조세저항 없이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국세청, 국세청40년사). 현재 복식장부나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외에도 추계신고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도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이와 같이 추계신고를 허용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160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장부의 비치·기록의 의무를 해치게 된다. 물론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능력을 고려하여 간편장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5,585,173명(비사업자 포함)중 소득세 과세미달 추정인원이 1,388,120명으로서 약 24.8%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 4,793,431명중 간이사업자가 1,680,656명으로서 35.0%(납부세액으로는 4.4%를 차지함)에 이르러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도 세무행정의 능률화 및 납세편의 도모 및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¹⁾

최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기장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70조의2), 2012년 귀속연도 소득세신고에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57,012명이나 되고 있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추계신고를 한 경우는 468,967명으로서, 추계신고는 조세회피의 유인이 되고 있고 건전한 기장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

1)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회원국 평균 15.8%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8.2%로서 4위에 해당한다. 50대 이상이 60%이상이며, 규모도 영세하여 본인을 포함해 전체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0%가 넘는다(조선일보 2014.6.3). 본 연구는 추계신고자 중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 추계신고자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의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아직도 추계신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무기장자에 대한 기장권장 홍보, 기준경비율의 조정과 기장세액공제를 인상 등을 통해 기장확대를 유도해 왔으나, 아직도 개인사업자 중 37.2%(2012년 귀속 기준)가 기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중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되어 있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²⁾

한편 추계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제도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고, 매년 발간되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도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신고서와 단순경비율신고서 작성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계신고제도는 소득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추계결정과 혼동을 주고 있고, 무기장신고를 정당화하는 모순이 있다.

장부의 기장, 비치 및 보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85조의3), 부가가치세법(제71조), 소득세법(제1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 면제와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기장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으나, 최근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침(국세청 보도자료, 2013.4.11),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준금액 인하(2014.7.1 시행),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 및 제144조)등 소규모사업자(예를 들어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한 인식은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³⁾ 국세청의 최근 8년간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탈루소득율은 44%⁴⁾에 이르러 현금수입업종, 전문 직종 등 개인사업자의 탈세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세법지식과 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납세협력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공평성과 근거과세⁵⁾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장의무를 확대시켜야 하는 필

2) 김유찬(2009)은 추계신고를 허용함으로써 기장능력이 있는 사업자도 무기장신고를 선호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 이하로 소득금액을 조절하여 신고해 성실한 기장 및 신고풍토를 저해하여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중호(2002)는 수리적 모형을 통해 기장세액공제가 기장신고납세를 증가시키고 무기장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신고 납세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세청도 매년 국회입법보고 자료에 기장사업자 유형별 신고현황(세무조정, 간편장부)을 포함하여 국회나 과세관청 모두 기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3)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기준 9조 8,878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증빙서류발급(협력비용 비중 17.4%),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31.3%), 장부기장(15.0%), 신고납부(22.0%) 등에서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목표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13.10.16).

4) 동아일보, 2013.9.23. 추계신고자만의 소득탈루율을 구분하기 어려우나 매출누락, 세무조사시 해명불안 등의 이유로 추계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조세연구소 2010 ; 장용운 2011).

5)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부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증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간편장부(국세청고시 제2012-35호,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계신고제도의 문제점을 국세통계자료와 법령,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추계신고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하며,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추계신고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사례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추계신고제도의 현황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추계신고제도의 연혁

1966년 국세청 개청을 계기로 「녹색신고제도」를 실시하였고, 1975년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1976년 「서면신고제도」(구 소득세법 제119조, 1990.12.31 개정)를 도입하여 기장에 의한 서면기준을 이상 신고자에 대하여서 서면조사로 종결토록 함으로써 기장확대를 통한 성실 신고를 유도하였다. 1996년부터(1995년 귀속분)는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장신고자의 서면신고율을 폐지하였다(국세청 40년사, 593-616). 한편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1999년 1월 이후부터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였다(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함). 간편장부는 복식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쉽고 간편하면서 소득금액계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 부여 및 장기적으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다(서울행법 2013.8.29 선고 2012구합31786 판결).

2001년까지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⁶⁾ 2002년부터는 소득률과는 반대로 경비율(기준경비율⁷⁾과 단순경비율)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소득세법

2012.8.1)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공정세정 포럼(2011)의 주제발표에서는 근거과세 정착을 위해 기장문화에 배치되는 간이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추계과세의 남용방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6)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빙서류를 갖춘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200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었다(서울행법 2006. 3.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7)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과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경비와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시행령 제145조).

2011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을 의무화하고 세무사로 하여금 신고내용을 검증하게 하여 필요경비의 검증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의 유형

<표 1>은 업종별 기장의무(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와 무기장시 적용할 경비율 유형을 적용하기 위한 금액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전기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대상이 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가 있으며,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무기장가산세가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자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등이다. 신규개업자로서 해당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표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판정기준

업종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추계신고유형 : 무기장 (전기 및 당기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확인서첨부 대상 (당기수입금액 기준)
	간편장부	복식부기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 (당기 수입금액 기준)		
		자기조정	외부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도소매, 건설업 등	3억원 미만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0백만원 이상	60백만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제조, 음숙업 등	1.5억원 미만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6백만원 이상	36백만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개인서비스업 등	75백만원 미만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4백만원 이상	24백만원 미만	75백만원 이상	75백만원 미만	5억원 이상

주1) 세무사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5조의2. 외부조정 대신에 자기조정시 무신고로 봄.

주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을 실효성제고를 위해 하향 조정되어(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제1항, 2014.1시행),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임(이전 기준 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의 10배로 설정한 것임).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는 5%임.

입금, 퇴직금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한 금액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기준경비율 방법은 가급적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 주3)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을 강화하여 직전연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여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차단하였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3억원은 복식부기 기장의무액 중 최고금액(도소매업 등의 3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2014개정세법해설, 255).
- 주4) 기준경비율 도입초기 2002귀속분 기준액은 업종별로 현재의 2.5배 수준이었으나, 점차 축소하여 2008년 귀속분부터 현재기준을 적용함. 의료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함.

3. 국내의 추계신고 현황

가. 개인사업자의 무기장 신고 비중

<표 2>에서 보듯이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수차례의 기장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1996년 귀속분의 무기장율 62.4%에서 16년이 지난 2012년 귀속분은 37.2%로 감소되어 조세정책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기장신고의 감소율은 매년 아주 적은 폭으로 이루어져, 근거과세의 기반은 아직도 취약하며 기장문화를 개선할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순수 증가 사업자(신규개업자-폐업자)가 약 42만명이었으며, 추계신고자도 약 26만명이 늘어나 무기장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개인사업자의 무기장 신고비율 추이

(단위 : 천명, %)

귀속 연도	개인사업자 인원	무기장 신고			비 고
		인원	비율(%)	전년대비 감소율	
1996	1,226	765	62.4	—	신고납세제도 도입
1997	1,275	770	60.4	2.0	
1998	1,213	718	59.2	1.2	
1999	1,322	749	56.7	2.5	간편장부 도입.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10%)
2000	1,536	856	55.7	1.0	무기장가산세 10%부과(소규모사업자 제외)
2001	1,741	951	54.6	1.1	
2002	1,942	1,023	52.7	1.9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2003	2,031	1,013	49.9	2.8	
2004	2,133	989	46.4	3.5	무기장가산세 인상(20%)
2005	2,196	966	44.0	2.4	
2006	2,616	1,221	46.7	(+)2.7	

〈표 2〉 개인사업자의 무기장 신고비율 추이 (계속)

귀속 연도	개인사업자 인원	무기장 신고			비 고
		인원	비율(%)	전년대비 감소율	
2007	2,900	1,315	45.3	1.4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율 상향조정(15%)
2008	3,393	1,528	45.0	0.3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율 인상(20%)
2009	3,336	1,353	40.6	4.4	
2010	3,529	1,383	39.2	1.4	
2011	3,702	1,394	37.7	1.5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1/2로 축소. 간편장부 기장혜택 폐지.
2012	3,903	1,453	37.2	0.5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사업자(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를 제외함.

나. 기장과 추계신고인원의 현황

<표 3>에서 비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중 추계인원비율은 최근 3개년간 39.2%, 37.7%, 37.2%로서 매우 낮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추계비율은 약 40%를 유지하고 있어 기장문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2012년 기준경비율 대상자(468,967명) 중에서 복식부기대상자임에도 추계신고한 자(57,012명)를 차감한 간편장부 대상자(411,955명)의 간편장부 기장확대도 현실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⁸⁾ 2012년 추계신고자 중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67.7%로서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귀속분부터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자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⁹⁾

8) 홍인수(2013)연구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보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성실납세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국세행정포럼(2014.9.16)에서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대상자 확대 등 간편장부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나,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한 비율이 49%에 달하는 것을 보면(2012년 기준) 간편장부대상 확대방안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9)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는 무신고가산세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나 무기장가산세와는 중복 적용된다.

〈표 3〉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인원의 현황(2010~2012년)

(단위 : 명)

	세부유형		2010귀속	2011귀속	2012귀속
기장	복식	외부조정	874,057	890,436	974,128
		자기조정	122,382	139,365	156,739
	성실 신고	성실납세방식	1,098	566	372
		성실신고확인	N/A	69,556	65,275
	간편장부		1,148,707	1,208,464	1,253,220
	소 계		2,146,244	2,308,387	2,449,734
추계	기준경비율		449,870	452,222	468,967
	단순경비율		933,431	941,993	984,705
	소 계		1,383,301	1,394,215	1,453,672
소 계			3,529,545	3,702,602	3,903,406
비사업자			255,703	254,100	449,523
총 계			3,785,248	3,956,702	4,352,929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1-2013년 판. 종합소득 확정신고 현황총괄(발췌).

주) 비사업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이며, 과세미달자는 제외함. 성실납세방식 신고는 실효성이 없어 2011년부터 폐지됨.

다. 기장의무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표 4>에서 보면 2012귀속연도에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적극적으로 기장신고를 한 인원이 1,454,973명이지만(전년대비 6.1% 증가), 복식부기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로 신고한 인원이 57,012명(전년대비 4.3% 증가)으로서 아직도 기장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에 복식부기대상자의 장부기장 비율은 94.6%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장비율은 51.0%로 나타나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므로 적격증빙을 충분히 갖춘 사업자의 기장은 어렵지 않으나, 매출누락과 증빙불비 등 추계신고를 한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계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있으나 세무 조사인력의 한계로 제한적인 범위내¹⁰⁾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0) 국세통계연보(2013)에 따르면 2008년-2012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은 연 평균 3,651명 수준이다(연 평균 사업자 3,594,323의 0.1%임). 2012년 귀속분 세무조사 대상 규모를 보면 1억원 이하 505명, 5억원 이하 1,446명, 10억원 이하 1,009명, 50억원 이하 1,294명, 50억원 초과 309명으로서 10억원 이하자가 64.9%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신고소득세 조사비율은 일본은 3.2%(2012년 기준, National Tax Agency Report), 미국은 1.0%(FY2013 Data Book) 수준이며 현장조사 외에 다양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4〉 기장의무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2011~2012 귀속연도 기준) (단위 : 명)

기장의무별	기장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복식부기 대상	914,747	994,761	55,498	57,012	—	
간편장부 대상	1,393,640	1,454,973	1,338,717	1,396,660	—	
비사업자	—		—		254,100	449,523
합 계	2,308,387	2,449,734	1,394,215	1,453,672	254,100	449,523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2-2013년판.

라.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의 추정(복식부기의무자 대상)과 중점관리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는 학원강사, 운동선수, 작가, 연예인, 오피상, 보험모집인 중 고소득자로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업종이거나, 시장상인 등 현금선호 업종으로 추정된다. 추계신고가 많은 업종의 대규모 사업자부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기장의무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¹¹⁾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배제(소득세법 제45조), 무신고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72조 제4항), 기준경비율을 1/2로 삭감, 신규사업자라¹²⁾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자는 <표 4>에서와 같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중 추계신고자의 업종과 규모에 대한 국세청 자료가 비공개로 관리되어 최신의 자료는 알 수 없으나, 참고 목적으로 1998년 귀속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유형을 보면 14%(2012년은 5.4%)가 추계신고 하였으며, 기장비율이 낮은 업종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창고업, 기타 업종 등이었다.¹³⁾

11)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은 근거과세의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서울행법 2006.3.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사업자가 주요경비 증빙서류를 적절히 갖춘 경우에 기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작가, 강사, 운동선수 등)의 추계과세시 수입금액이 비교적 명확히 노출되고 주요경비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적으므로 공평성의 문제가 있고, 일반 업종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한다면 허위기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신현걸·정재연 2014 ; 최진구·홍정화 2011). 하지만 인적용역소득자만 타 업종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어려움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근거과세,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1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의 축소를 방지하고자 개정하였다(한국세무사회, 소득세실무, 943).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장신고 시에 비해 추계신고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2011개정세법 해설, 48).

13) 국세청, 2000년 국세행정개혁백서, p.126.

4. 외국의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주요 외국에서는 대부분 추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장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장의무를 면제하거나 추계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외국의 기장의무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기장문화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규모사업자의 구분기준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납부의무 면제, 간편납세 등 다양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일 본

일본에서도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가 원칙이다. 일본에서는 「추계신고」는 허용되지 않고, 직접자료에 의한 과세가 어려운 경우에만 「추계과세」가 인정되고 있다. 추계과세는 기장사업자(청색신고자)¹⁴⁾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청색사업자의 취지에서 볼 때 청색신고에 대하여 높은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일본의 추계과세제도 해설). 무기장시 추계과세의 방법에는 순자산증가법, 비율법, 효율법 등이 이용된다. 추계과세는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추계액이 진실의 과세표준이나 세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반증하여야 한다.

청색신고자의 경우 세무조사후 경정통지서에 경정의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일본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백색신고자의 경우는 세무조사 후 경정시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황, 수입과 지출상황, 생산량과 판매량, 종업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다(일본 소득세법 제156조).

장부의 유형에는 복식부기 장부와 간이장부가 있으며 청색신고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복식부기 장부기장시 최고 65만엔의 특별공제를, 그 이외의 청색신고자는 간이장부 작성시에는 최고 10만엔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¹⁵⁾ 간이장부 기장시 장부종류는 현금출납장, 매출장, 매입장, 경비장, 고정자산대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간이장부와 유사하다.

세법개정 전에는 전전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3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이기장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1년 12월 세법개정시(일본 소득세법 제231의2조, 부칙 제8조) 금액기준을 폐지

14) 일본의 청색신고는 복식장부를 비치하고 자주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류가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제도로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부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일본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청색신고자는 각종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도가 있고, 순손실의 이월 공제(일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시험연구비 세액공제특례(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정의 제한(일본 소득세법 제155조) 등이 적용된다. 청색신고자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의 사업자는 백색신고자로 분류된다.

15) 日本 國稅廳, 帳簿の 記帳のしかた, p.9. 우리나라의 기장세액공제액보다 큰 금액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하고 2014년 1월부터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기장의무 및 기록보존의무를 부여하여 기장관행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金子 宏, 756-757 ; 鳴島安雄, 160).

나. 미 국

미국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 §6001에 따르면 납세의무를 지는 모든 개인은 기록을 유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부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모니터하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무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록방법은 수입이나 지출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복식부기와 단식부기 선택가능) 장부는 거래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분개장이나 원장에 요약된다.¹⁶⁾

이러한 장부나 증빙은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는 일정기간동안 (3-7년 또는 부정신고시는 무제한) 보관되어야 한다. 고의로 장부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25,000달러 이하(법인인 100,000달러)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IRC 7203).

다. 프랑스

프랑스의 소득세 체계상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간편과세제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상적인 정상과세제도, 간편과세제도, 소규모기업과세제도가 있다. 연간 매출액이 76만 3천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정상과세제도로서 상법 및 CGI(Code général des impôts)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76,300유로 이상 763,000유로까지는 간편과세제도(국고국이 정한 간편장부 서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를 채택한다. 76,300유로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일기장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조세는 과세관청에서 추계방식에 의해 과세한다(안창남, 125-126).

라. 영 국

자영업자의 장부기록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전통적인 회계처리(발생주의 회계)가 아닌 현금주의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기준은 사업소득이 81,000파운드 이상이며 이 금액미만 사업소득이 예상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주의(cash basis)로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세무신고가 가능하다.¹⁷⁾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사업비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현금주의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연도 중 사업이 성장하여 사

16) IRS, publication No.583

17) 영국국세청 홈페이지(www.hmrc.gov.uk). 'Simpler income tax : cash basis' ; 'Business records if you're self-employed'.

업소득이 162,000파운드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처리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영국국세청은 기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접촉(10분-15분)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여(2시간 이내 소요) 사업유형에 따라 적정한 기록여부를 확인하는 점이 특이하다(HMRC, Checking your business records).

마. 독 일

독일의 기장 및 기록의무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14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과세에 중요한 기장 및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자는 타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과세를 위해서도 이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영업자 및 농림업자로서 세무관청의 확인 수 치상 개별사업에 있어서 매출액이 연 50만유로 이상이었거나, 사업연도의 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인 자는 제140조에 의한 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련된 장부의 기록을 하고, 동시에 매년의 재고에 기초하여 결산의무를 진다(독일 조세기본법 제141조)(김유찬·이유향, 419).

독일에서는 세금 포탈의 위험성이 있는 질서위반 행위로서 회계장부 및 기록에 관한 법적 의무의 미준수에 따른 과료가 있다(독일 조세기본법 제379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의 질서위반행위는 5천유로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독일 조세기본법 제379조 제1항 제4호).¹⁸⁾

바. 주요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주요 외국에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규제상 완화조치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추계과세제도도 무신고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소득추계방법의 하나일 뿐 신고유형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일본은 2014년 1월부터 사업 소득자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기장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는 청색신고 사업자에게는 조세상혜택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장관련 세제개편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첫째, 주요 외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와 기장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부가 없는 경우에만 다양한 추계방법으로 소득을 추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추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기장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금액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18) 국회도서관, 2013, 독일의 조세기본법(번역본).

5. 선행연구의 검토

가. 추계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신현걸·정재연(2014)은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에서 현행 추계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인적용역 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는 과세방식을 배제함으로써 수입금액 구간별로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진구·홍정화(2011)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추계과세 방식에 대하여 성실신고여부, 타소득자와의 공평성, 적정 과세소득을 측면에서 세무업무 종사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인 시사점으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실제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연분연승법 적용, 필요경비 인정범위의 한도설정, 과거투입비용에 대한 상각 인정 등을 통해 현행제도하에서 인적용역소득자들의 허위신고와 세무대리인의 허위기장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찬(2009)은 추계과세제도와 관련 최근의 판례동향을 분석한 뒤 추계과세를 하게 되면 실질과세를 하는 것보다 다소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추계과세 방법을 조정할 것과 현재 추계과세방법은 업종별로 거의 동일하므로 업종별로 나누어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박태승(2006)은 소득세 추계과세제도 중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소득상한 배율 폐지, 주요경비 범위 확대와 함께 소득신고 누락시 추계결정 방법으로서 순자산증가법, 현금지출액법, 은행예금 잔액법 등을 도입하고, 정액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이나 기장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것을 제시하였다.

서희열·허양원(2000)은 소득간 불평등에 대한 문제이전에 원칙적으로 과세권에서 누락되는 소득을 양성화시키는 방안과 일정한 소득없이도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납세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과세방법을 연구하여 프랑스의 생활 수준에 의한 소득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상의 한계점도 언급하고 있다.

나. 기장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신고는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결국 추계신고 축소를 통한 기장확대방안이 주요한 연구주제이므로 관련연구를 요약하였다.

이병대·서희열(2013)은 자영업자 중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으로서 납세의식의 제고,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체계강화¹⁹⁾, 장부기장의 확대, 추계과세제도 개선, 세무조사 강

19) 정부는 면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직전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2015.7.1시행),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2016.1.1시행)는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화 및 조세회피행위 차단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부기장의 확대 방안으로는 과세근거 기반인 기장의무자 비율 확대와 함께 허위기장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부기장 의무 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을 점차로 하향하면서 무기장가산세를 강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배제하고 모든 소득신고를 기장 또는 증빙에 의하여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장용운(2011)은 소규모사업자의 기장확대를 위해 1)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지원과 경제 환경요인 조성 2) 세법을 개정하여 간편장부 기준금액 폐지에 따른 기장의무 확대와 간이과세 폐지를 주장하였다.

정덕주·박성배(2008)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부 기장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경제지원, 세무제도적 요인 정비(간이과세제도 정비), 과세표준 양성화, 기장세액공제확대, 세무대리인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2005년 1월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2010년 1월)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공제(2008년부터 시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민소영 2010 ; 박승식·박상연 2012 ; 한국조세연구원 2011 등), 간이과세제도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존치하고²⁰⁾, 그 이상의 사업자에게 우선 기장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²¹⁾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자의 무신고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와(김유찬 2009 ; 박태승 2006 ; 서희열·허양원 2000),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시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가 있으나(신현걸·정재연 2014 ; 최진구·홍정화 2011), 주로 기준경비율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납세자 측면에서의 사업소득 신고방식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추계신고제도 자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 달리 첫째, 추계신고제

20) 2012년 말 개인 사업자수는 총 5,283,253명으로서 일반사업자 3,080,753명(58.3%), 간이사업자 1,618,333명(30.6%), 면세사업자 584,167명(11.1%)이다. 특히 신규개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폐업자수/신규자수×100)을 보면 각각 84.1%, 96.3%, 76.6%로서 간이과세자인 영세사업자 폐업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국세통계연보, 343). 2006년 대비 2012년에는 일반사업자 수는 37.1% 증가한 반면, 간이과세자 수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과세자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21) 신영임과 강민지(2014)연구에서는 2012년도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므로, 소득탈루율을 축소를 위한 세정 역량을 고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도에 대한 법령 체계의 미비점을 검토하였고, 둘째, 국세통계, 실무사례와 판례 등 실증자료를 통해 추계신고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셋째, 외국의 사업소득자 기장의무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Ⅲ. 추계신고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1. 추계신고제도의 법령 체계의 미비점

가.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신고방식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와 추계방식에 의한 신고로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76 ; 노형철, 284). 현행 법령체계는 추계신고의 법적 성격을 종합소득 확정신고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월결손금 배제규정, 간주임대료 규정 등 개별 조문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 체계가 모호하고, 납세자나 과세관청에 추계신고와 추계과세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를 줄 수 있으며, 무기장신고를 당연시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업종별 평균율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추계과세에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인데, 이를 확정신고에 허용함으로써 소득세법상 기장에 의한 실액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나. 추계신고 관련 현행 법령체계의 검토

추계신고 관련규정은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항에서 「추계신고」(소득세법상 장부의 비치·기록의무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신고를 말한다)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2007.12.31), 「추계결정」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2008 개정세법해설). 소득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8조에서도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추계신고와 추계조사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²²⁾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을 보면 신고유형으로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어 추계신고도 신고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기장의무의 유형으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

22) 국세청의 공식의견은 아니나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사전에서 「추계신고」와 「추계과세」를 설명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 이상만 신고하면 신고액대로 세액이 결정되며 추계경정신고 등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세법이 개정되었고 납세의무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제40호 서식(4)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4항에서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신고와 추계조사결정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을 소개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서 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추계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현행 법령체계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추계신고 관련 현행 법령 체계

법 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비 고
이월결손금 배제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추계신고」 용어의 뜻을 규정함.
	간주임대료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추계신고」나 「추계조사결정」시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은 기장시보다 불리하게 규정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첨부서류(소득 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	①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확정신고 와 추계신고 관련 서식 지정) ② 시행규칙 별표 서식 40(1), 40(4)	① ‘장부와 증명서류’(소득세법 제160조)가 없는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첨부 의무 ②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표 및 조정계산서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함.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80조)	①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②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①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시 적용하 는 배율 (시행규칙 제67조) ② 국세청고시 제2014-14호 (2013 귀속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은 시행령과 국세청고시가 결합되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추계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 (소득세법 제160조)	① 장부의 비치·기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② 간편장부 포함내용 (수입, 경비, 고정 자산증감 등)	간편장부 서식예시 (국세청고시 제2012-35호)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를 규정함.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의의와 법적 성격의 검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매년 고시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목적을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국세청고시 제2014-14호, 2014.3.28) 기준경비율 등은 「추계신고」가 아닌 「추계과세」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제정한 기준경비율 등은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실질은 법규명령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완석·정지선, 492 ; 임승순, 468).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 근거하여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를 통해 매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경정 방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로 존속기한을 두고 있다(국세청 위원회 운영현황, 2014년 6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적합하도록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으면 사업자에게 기장신고를 기피할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라. 소 결

추계신고제도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조항으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 관련조항(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괄호안에 추계신고의 개념을 부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부칙(2007.12.31 제8825호) 제8조에서도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추계신고와 추계결정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신고양식을 예시하고 있고 확정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한 하나의 양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조문 입법 당시부터 추계과세와 추계신고의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신고방법을 과도기적으로 적용하고 언젠가는 폐지할 것을 전제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5조의 추계신고의 개념을 소득세 확정신고 조문(소득세법 제70조)에서 별도의 조항이나 단서조항으로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순차적으로 추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외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폐지하여 근거과세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세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사업자는 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방법 자체가 가급적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로 이행하기 위

한 과도기적 제도로²³⁾ 운영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경비율법 등은 세무조사시 추계과세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

2. 추계신고한 후 실지조사에 따른 경정시 기타추계경비 인정의 타당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가 원칙이나 기준경비율이 실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무기장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도 유리할 경우가 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규정되어 사업자의 개별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직도 많은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택하고 있어²⁴⁾ 근거과세를 통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 문제의 제기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 누락된 매출액과 증빙이 불비한 필요경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식으로 결정됨은 당연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경우에 일부 매출누락액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기타의 추계경비를 영(零)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례

개인사업자 A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와 함께 무기장가산세를 더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5개년도 총수입금액 약 150억 원 대비 0.4%에 불과한 6천3백만원이 누락되었다. 이에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 증빙에 의한 조사를 통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하였다.

- 23)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1년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174만 명의 사업자 중 45%인 79만명만이 기장신고를 하는 현실에서 표준소득율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기존 무기장 사업자의 신고불편, 행정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1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무기장비율의 37.2%인 것을 보면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제도라는 취지가 퇴색되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24) 한국조세연구소(2010)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부기장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해서(43%), 매입 자료를 못 받아서(17.8%), 추계신고가 편해서(17.8%), 기장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10.3%), 매출누락이 많아서(6.5%), 공적4대보험이 부담스러워서(4.6%)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적은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매출·매입 자료의 누락 가능성, 기장신고시 세무조사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주요경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인정되므로, 증빙만 갖추었다면 기장능력의 부족은 무기장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용운(2011)연구에서는 일반과세자의 장부기장 불이익으로서 공적보험료 부담(36.6%), 소득노출에 대한 세금부담(31.7%), 세무조사시 해명불안(17.1%) 순으로 나타났다.

나. 과세관청의 입장과 이를 긍정한 판례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장능력이 충분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계신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지조사를 수행한 후,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의 추계경비를 공제한 것이,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로 보아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을 긍정한 판례로서 대구지방법원(2013.10.25 선고 2012구합609 판결)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달리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추계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추가 제출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조세심판원(조심2009서1699, 2009.8.28)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당부를 판단하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비(기타 추계경비에 해당함)를 인정하는 대신에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비(법무사비용,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등)를 추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8두12764 판결)에서는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사건에 대해 사건 임야매매 과정에서 수입금액 및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추계조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세 가지 판례 및 결정례에서 모두 추계과세방법을 부인하고²⁵⁾ 실지조사방법에 따른 과세를 긍정하였는데, 수입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경비도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실액반증의 기회를 제공하여 증명자료에 의해 밝혀진 경우로 판단된다.

다. 검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이 가능하다(조심2012중1013, 2012.4.17). 그러나 추계신고도 소득세법 제70조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고,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세법에 정

25) 추계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를 다투는 경우 이는 추계요건사실인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임승준, 465).

한 방식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며(국세기본법 제22조), 신고내용에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만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정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납세자에 대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인 없이 매출누락 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할 경우 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서22, 2012.3.29).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탈루 및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하면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추계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비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2012.1.12 선고 2011두22044 판결)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 주요경비의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를 적법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경비 산정방법으로 적시하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 자체가 주요경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서 실지조사로 결정하나, 기타비용추계액은 추계조사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추계조사방법이라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오운 2013, 536).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가 가능한데, 비록 실지조사를 한 경우라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추계비용 전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²⁶⁾ 행정법원 판례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의 경우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있고, 국세청고시에 의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 장부기장신고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서울행법 2006.3.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그러나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나 그

26) 동일사업장의 일부내용만을 장부로 신고결정할 수 없으며(소득세법 해석편람 80-1-4), 동일 사업장의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추계로, 나머지 기간은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결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분추계금지원리와 기준경비율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실액과세(주요경비)와 추계과세(기타추계경비)가 혼합된 방법이라는 점이 혼동을 준다. 그러나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해서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을 받는데(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010.1.1 신설), 세무조사 후 상당한 금액의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추계신고시 기타추계경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라. 소 결

세무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발견된 경우 추계신고시 계상한 기타의 추계비용 전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은 추계신고에 따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대신에 실지조사결정으로 전환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의 추계신고는 법에 열거한 적법한 신고유형의 하나로서 신고내용에 중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한 함부로 경정·결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 점 ③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가 기준경비율 추계경정시 주요경비의 범위는 실액과세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주요경비 이외에 기타경비를 정부가 정한 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공제해야 하는 점 ④ 전체신고자의 0.12%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대부분 추계신고자가 신고내용대로 확정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와 다른 소득자와 과세형평성이 어긋나는 점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당초에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후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주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매출누락에 대한 기타의 추계경비는 추계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이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기타의 추계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종종 기장신고자에 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세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① 세무조사 후 일정비율이상(예를 들어 기장세액공제 배제기준인 20%)²⁷⁾의 소득금액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매출누락 등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로서 ② 장부 이외에 기타증명서류에 의해 수입금액과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밝혀져 고의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응비용의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대법원 2005.4.14 선고, 2005두64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10.25 선고 2012구합609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증빙을 갖춘 필요경비(이미 비치한 주요경비 외에 추가로 제출한 적격증빙에 의한 경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를 제외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의 추계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수입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도록 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7) 기장세액공제 배제 기준은 누락액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이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이상 소득금액을 누락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추계신고자는 본래 무기장자이므로 기장세액공제 배제기준인 20%를 제시하였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신고유형의 하나로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조세탈루가 명백한 경우에는 탈루 수입금액에 대한 기타의 추계경비 인정을 배제하여야 기장신고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세무조사대상 포함여부의 모호성

가. 문제의 제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장부기장면제자 제외)와 달리 기장할 회계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매출자료의 누락가능성과 세무조사의 사후처분에 대한 부담 등 무기장 유인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기장신고시 세무조사후 매출누락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추계신고 보다 엄격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한국조세연구소, 20), 추계신고를 선호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며 기장의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 보다 엄격한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데(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정기선정 대상인지 수시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 검토

세무조사시 정기선정의 사유로는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수시선정의 사유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3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에 기재한 무신고에 해당한다.²⁸⁾

성실신고확인서의 미제출의 경우 수시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 주요 업종별 불성실신고 유형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14.5.8).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추계신고도 기장신고와 함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세무공무원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

28)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무신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기장불이행에도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7항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 $\text{Max}(A, B)$

—A : 무신고 가산세 = $\text{Max}(\text{산출세액} \times 20\%, \text{수입금액} \times 0.07\%)$

—B : 무기장 가산세 = $\text{산출세액} \times 20\%$

하인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등)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기 선정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국세기본법 제 81조의6 제5항), 추계신고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²⁹⁾ 비록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조사인력의 한계로 실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³⁰⁾

다. 소 결

추계신고도 기장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의 일종으로 본다면, 추계신고자라고 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점진적인 기장확대를 위해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한 신고시 무신고로 보아(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세무조사방법과 더불어 보충적 기법³¹⁾을 활용하여 인력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계신고시 기장신고자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2012년 귀속분의 경우 총 개인사업자의 0.12%에 지나지 않아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³²⁾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인력의 한계가 있으나, 세무대리인의 협력(신고확인 등), 조사유형의 선택, 조

29)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고객만족센터, 상담사례 2012.3.2). 종전에는 기장사업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세무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공표한 적도 있다(서울경제 2004.5.18). 이후 국세청은 정기선정 시 업종별, 규모를 고려한 후 그룹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자 등 신고유형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여 정기선정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국세청 보도자료 2009.10.15). 한편 단순경비를 해당자도 무신고의 경우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질조사 결정은 가능하다(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4).

30) 2012년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확정신고인원 대비 0.12%(4,563/3,956,702명)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인원에 대해 수입규모별로 보면 1억원 이하(간편장부대상자로 가정)의 사업자도 11.1%(505/4,563명)가 포함되어 있어, 간편장부대상자 수준의 사업자도 일부 조사가 이루어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신고 유형별(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간편장부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로 세무조사 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아 자료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 다양한 세무조사유형(조사사무처리규정)과 더불어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현장확인과 사후검증,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상의 사후검증 등을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성실신고유도를 위해 『적격증빙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요경비를 적격증빙과 비교·분석하여 사후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근거과세의 확립과 장부기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32)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예로업종, 경제성장 견인업종 등 132만개 중소 상공인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국세청, 2014.9.29). 그러나 이 조치는 단순경비를 대상자를 제외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로 보인다.

사기법의 개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교육이수 의무조건을 부여하자는 견해(박승식·박상연 2012)도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로 보이며,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자관리현장, 세무신고 주기안내 등과 더불어 장부(간편장부 포함)기장의무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매년 소득세신고기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기장세액공제의 확대 필요성

추계신고를 근절하고 기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장유인제도와 무기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추계신고시 무기장 가산세는 20%로 과세하고 있어 가산세율의 인상은 논외로 하고³³⁾, 기장유인제도의 확대측면을 검토하였다. 납세자는 기장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 생길 때 기장을 하려는 동기가 강하므로 기장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장용운 2011 ; 국중호 2002). 추계신고자에게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장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 기장세액공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성실신고유도를 위한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연혁을 보면 1999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은 10%(공제한도는 100만원)이었으나, 20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에는 15%로 공제율을 인상하였다. 그 후 2008년부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시 2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정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는 소규모사업자의 복식장부기장 유도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작성시 혜택을 2010년 귀속분에는 5%,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고, 복식장부 기장시 20%공제 제도만 남게 되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한편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10%이상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33)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외에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2014.5.7 최종갱신).

〈표 6〉 일반사업자 기장세액공제

귀속연도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천원)	세법상 한도
2008	607,053	63,704	105	
2009	562,531	61,604	110	
2010	574,617	42,404	74	간편장부 기장 혜택 축소(5%)
2011	126,953	34,046	268	간편장부기장 혜택 폐지
2012	134,441	37,071	276	
계	2,005,595	238,829	119	

자료 : 2013국세통계연보, p.35.

주) 2011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시에만 기장세액공제 적용함.

<표 6>에서 보면 2011년 이후 기장세액공제 대상인원이 급감한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간편장부기장시 혜택을 폐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³⁴⁾, 2012년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전체 간편장부 대상자 중 극히 적은 인원인 4.7%(134,441/2,851,633명)에 지나지 않는다.³⁵⁾ 그 세액공제액도 2012년 기준 평균 276천원으로서, 복식장부 최소기장비용(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월 8-10만원)³⁶⁾을 고려할 때 기장세액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34) 1999년 도입된 간편장부 기장세액공제는 2011년 귀속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일본에서도 2005년 이후부터 청색신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간이장부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를 폐지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간편장부대상자 중 추계신고자가 과반수에 이르고, 간편장부가 영세업자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기장의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5)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충분한 기장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각종 증빙을 수취하고 기장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매출누락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기장시 세무조사를 엄격히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신고를 선호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도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기장신고보다 납세액 규모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으며, 영세성과 세법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추계신고도 대부분 세무대리인의 신고나 서류작성의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기장의무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2011)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56.3%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김상호·황이규(2006)연구에서도 개인사업자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6.3%로 나타나 세무신고에 대한 이해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6) 세무대리인의 증가와 경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비용도 수년간 정체되거나 감소되고 있다. 최근 개업세무사는 10,315명(2014.6기준)이며, 개업 회계사는 11,060명(2014.5기준)으로서 2009년 말 기준 세무사/회계사 개업자수는 8,403/9,223명이었다. 이재목·김용(2011)연구에 의하면 월 평균 기장수수료는 141,300원(최소값 50,000원, 최대값 440,000)이었다. 이는 일부지역의 자료이지만 기장수수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홍인수(2013)연구에서는 기장수수료 외에 세무조정비용, 성실신고확인비용 등을 감안한 외부협력비용은 간편장부대상자가 평균 302천원, 복식부기의무자는 평균 3,657천원으로 나타났다.

된다. 성실신고 확인시 비용공제율인 60%로 확대하는 경우(현재의 3배 수준으로 상향조정), 기장을 의뢰할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액공제액 평균이 276천원이므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더라도 향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100만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관리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귀속분 신고부터 적용되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과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국세무사회 50년사, 405).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부여한 제도이다.³⁷⁾ 세액공제 한도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표 7〉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확인세액공제

귀속연도	인원(명)	금액(백만원)	평균(천원)
2012년	56,874	49,030	862천원

자료 : 2013국세통계연보, P.38.

주) 국세청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자료를 작성·공개하지 않음.

〈표 7〉과 같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액공제 한도에 가까이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액공제제도가 한도금액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2012년 기준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평균적으로 862만원/60%=144만원 정도³⁸⁾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 1〉에서 예시한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납세자 측면에서는 세무조정수수료와 중복된 비용의 지출로 생각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기장수수료,

37)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업무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 부실확인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에 따라 감리를 받고 감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견책, 과태료, 직무정지). 중대성에 따라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규정위반으로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내부양정규정에 의한 징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를 받을 수 있다.

38) 2013.1.1.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업에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제외된 수치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39) 박주영·전병욱(2013)은 2014년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할 경우 과세관청이 얻는 효익은 더욱 증가하는 반면 납세의무자(직접비용)와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간접비용)은 더욱 커져서 양자 간의 괴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지원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무조정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되는 외부협력비용임과 더불어 세무대리인에게 엄격한 책임이 부여되므로⁴⁰⁾,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되고, 세무대리인을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과 세액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⁴¹⁾

다. 추계신고와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뿐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자는 제외함)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연도별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내역을 보면 <표 8>과 같다. 과거 5년간 무기장 가산세 건수나 금액 면에서 보아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무기장자 비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평균 무기장 가산세는 건당 평균 266,247 원으로서 무기장가산세를 20%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산출세액은 1,331,235원으로 추정되는데, 산출세액이 존재하는 전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의 평균 결정세액 5,352,694(18,900,339 백만원/3,530,995명)의 24.9% 수준으로서 추계신고자의 상대적인 영세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추계신고자의 기장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장세액공제율을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8> 연도별 소득세법상 무기장가산세

연도별	건수	금액(백만원)	건당 금액(원)
2008	211,033	61,010	289,101
2009	210,761	53,482	253,756
2010	200,997	59,880	297,914
2011	201,093	52,527	261,207
2012	212,927	49,149	230,825
5년 평균	207,362	55,209	266,247

자료 : 2013국세통계연보, p.42. 일부수정.

주) 결정·경정시 가산세로서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는 제외한 수치임.

라. 소 결

과세관청은 추계신고제도를 계속 허용하여 평균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인정함과 동시에 무기장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으로 보인다. 또한 근거과세와 과세강화를 위한

40) 황영현(2014)은 2011년도 성실신고확인제도 실시에 따른 유의한 세수증가효과(2010년 대비)를 보이고, 지방세신고에서도 세무사 등의 간접확인방식 도입을 제안하였다.

4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대안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조치로서 소득상한 배율의 상향조정,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삭감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으로서 근본적인 기장확대 정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추계신고자의 자발적인 기장확대를 위해서는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사업자는 기장을 위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세무대리인의 기장수수료, 조정수수료 부담이 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청색신고자에 주는 기장세액공제혜택(최고 65만엔)과 같이 대폭적인 상향조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기장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같이 60% 수준)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최근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신설과 기준경비율제도의 강화 등으로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추계신고의 비중은 적지 않은 편이다.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다는 것은 업종평균의 비용을 인정한 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도 추계신고 하는 인원이 있는 이유는 기장신고보다 유리한 요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추계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장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납세자간의 과세공평과 선진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제도는 가급적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완전한 근거과세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와 간이과세배제업종 확대 등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은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추계신고의 개념을 소득세 확정신고 조문(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고, 추계신고제도의 적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 기장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의무를 강화시켜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는 폐지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추계신고제도를 법령에서 삭제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계 과세방법의 하나로서만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법령 체계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후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매출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산출 근거의 중요부분을 실지조사로 입증

가능하거나 추계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결정과 경정시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의 추계경비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세무조사후 소득탈루율이 일정비율(소득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실액과세를 하게하고, 대응비용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의 추계경비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계신고자의 세무조사후 추정되는 과세는 현재 추계결정방법으로 하고 있어 추계신고를 선호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한 신고시 무신고로 보아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료하게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추계신고시 기장신고자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 간편장부 등 장부기장에 대한 지침서 교부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기장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인 기장유인제도로써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소득세법 제56조의2)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수준인 6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기장의무를 확대하는 대신 실질적인 세액공제의 유인을 부여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을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확대하고, 업종평균율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제도를 축소하거나 일정기간 유예 후 폐지하여 개별사업자의 실적을 반영한 신고과세로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세정이 조속히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자료수집을 위해 국세청의 공개자료 범위 내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추계신고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과 규모, 추계신고 유형별 세무조사 실시현황 등 구체적인 세무자료의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사업자의 급격한 세액증가와 세법의 이해도,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제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_____. 조사사무처리규정.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_____. 2001. 2000년 국세행정개혁백서.
 _____. 2006. 국세청40년사.
 _____. 2014.3.28. 국세청고시 제2014-14호, 2013년 귀속경비율 고시
 _____. 2014.6. 국세청 위원회 운영현황.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013.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및 상담실무(2012년 귀속).
 국세청 보도자료. 2009.10.9.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_____. 2013.10.16.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
 _____. 2014.5.8.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_____. 2014.9.16. ‘국세행정포럼,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확충 방안 논의’.
 국중호. 2002. “추계과세제도 및 기장유인제도가 신고납세와 과표양성화에 미치는 효과”. 세무학연구 제19권 제1호 : 23-43.
 국회도서관. 2013. 독일의 조세기본법(번역본).
 기획재정부. 2012. 『조세개요』.
 _____. 2014.8.6. 2014년 세법개정안.
 김상호·황이규. 2006. “사회심리적 특성과 세무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4집 : 249-270.
 김완석·정지선. 2014. 『소득세법론』. 광교이텍스.
 김유찬. 2009. “추계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 동향의 분석”. 조세학술논집 제25집 제1호 : 163-177.
 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노형철. 2014. 『세법요해』. 광교이텍스.
 민소영. 2010.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승식·박상연. 2012. “공정사회와 과세표준 양성화”. 국제회계연구 제42집 : 257-288.
 박주영·전병욱. 201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박태승. 2006.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4호 : 109-131.
 서동국·허 원. 201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 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 제186호.
 서희열·허양원. 2000. “음성·탈루소득의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 세무학연구 제15호 : 271-304.
 신영임·강민지. 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

- 고서 제18호.
- 신현걸·정재연. 2014.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293-317.
- 안창남.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 오 윤. 2013. 『세법원론』. 한국출판정보.
- 이병대·서희열. 2013. “소득과액과 면세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조세연구 제13-1집 : 95-130.
- 이재목·김 용. 2011. “기장수수료가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28권 : 19-46.
- 임승순. 2014. 『조세법』. 박영사.
- 장용운. 2011. “소규모사업자의 기장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5권 제1호 : 219-246.
- 정덕주·박성배. 2008. “소규모사업자의 기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 35-72.
- 최진구·홍정화. 2011.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 79-118.
- 통계청. 2011 통계자료. 근로환경조사 : 학력(자영업자)
- 한국세무사회. 2013. 『한국세무사회 50년사』.
- _____. 2014. 『소득세 실무』.
- 한국조세연구소. 2010.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신고 유도방안』. 용역보고서.
- 한국조세연구원. 2011.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공정세정포럼.
-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2008. 일본의 추계과세제도 해설.
- 홍인수. 2013.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영현. 2014. “지방세계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소고”. 계간세무사(여름호) : 86-103.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1. Publication 583(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_____. 2014. FY2013 Data Book.
- 日本 國稅廳. 帳簿の 記帳のしかた. 平成 25年 4月 1日 기준.
- _____. 2014. National Tax Agency Report.
- 金子 宏. 2013. 『租税法』. 弘文堂.
- 鳴島安雄. 2013. 『圖解 所得税』. 大藏財務協會.
- <http://www.law.cornell.edu/uscode>(미국세법 검색)
- <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일본세법 검색)
- <http://www.franceaccountants.com/tax.html>(프랑스세법 검색)
- <http://www.legifrance.gouv.fr>(프랑스세법 검색)
- <http://www.hmrc.gov.uk>(영국세법 검색)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 in Korea*

Park, Taeseung**

—〈Abstract〉—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should be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or simplified bookkeeping. However,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 (“TREI”) is still permitted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practices on TREI system and introduces an improvement plan.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spects of TREI system ; its problems and solutions of TREI though case study and tax credit for bookkeeping. The sugges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 short-term treatment to TREI implications is twofold. TREI should be defined in the clause of final tax return in Income Tax Law. TREI should be reduced gradually to reinforce tax return by bookkeeping and appropriate documentary taxation. In a long-term perspective, TREI be repealed and a basic (simple) ratio method be used only under estimated taxation by tax authority.

Second, under current Income Tax Law, estimated expense in TREI should be deducted in proportion to additional income assessed by tax authority unless tax authority prove taxpayer’s intentional TREI rather than tax return by bookkeeping or find most of critical evidence in TREI. However, the effect of TREI should be voided when the tax authority find the omission of taxable income by more than 20% during tax audit. Taxpayers should provide their own proof of expense in accordance with the additional gross income assessed by tax authority.

Third, ‘taxpayers with double-entry bookkeeping requir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pool of special audit when they report TREI. Tax authority provide simplified or double-entry bookkeeping guidelines to new business owner and continuous publicity on bookkeeping.

Fourth, double-entry bookkeeping tax credit for taxpayers with simplified bookkeeping should be increased up to 60% of the related expense incurred.

I expect this study to ensure the expansion of ‘tax return by bookkeeping’ and secure equity among taxpayers as well as appropriate documentary taxation.

〈Key words〉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TREI), estimated taxation by tax authority, basic(simple) expense ratio method, tax credit for bookkeeping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2014 Induk University Research Fund.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Induk University